

# (주)미투온 제 12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 조와 우리회사 정관 제 25 조에 의하여 제 12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 조의 4 및 정관 25 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30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5, 다른빌딩 9층

###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의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사항 :

제 1 호 의안 : 제 12 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최원석 재선임의 건

제 3-2 호 의안 : 사외이사 채수원 신규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 상근감사 조정희 신규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 참석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련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인터넷 검색창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2022년 03월 18일 09시 ~ 2022년 03월 29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다. 본인 인증방법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행사 :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은
  - 1)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서명 및 기명날인)원본,
  - 2)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주의 신분증 사본 중 1,
  - 3)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 하셔야 합니다.\*위임장은 원본만 인정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9. 기타사항

-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4 항 제 4 호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 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회사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e2on.com/>)
- 주주분들께서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체온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인원에 대해 발열체크,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금번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http://dart.fss.or.kr>)

2022년 03월

주식회사 미투온

대표이사 손창욱 (직인생략)

별첨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p><b>제2조 (목적)</b>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12.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13. 블록체인 관련사업 및 연구개발업 1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거나 관계되는 사업 일체</p>	<p><b>제2조 (목적)</b>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14. 블록체인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 인터넷 전자화폐 및 전자상품권 발행업 16.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거나 관계되는 사업 일체</p>	<p>신규사업 등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등</p>
<p><b>제 8 조 (주식의 종류)</b>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b>제 8 조 (주식의 종류)</b>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범위내로 한다.</p>	<p>종류주식 추가를 위해 관련 조항 수정 및 추가</p>
<p>신설</p>	<p><b>제 8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b>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우선주식, 누적적 우선주식 또는 비 누적적 우선주식,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 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 (상환우선주식 포함)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제8조 3항에 따른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u>최저배당률은 연 액면 금액에 1%로 하며,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우선배당한다.</u> ③ 회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 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의 결의로 존속기간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u>발행일로부터 2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 발행시에 정하며 그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u>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b>제 8 조의 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b> ①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상</p>	

	<p>환하거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u>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단, 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li> <li>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li> </ol> <p>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별도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p> <p>⑥ 회사는 제8조의4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p>	
<p>신설</p>	<p><b>제 8 조의 4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b></p> <p>①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p> <p>③ <u>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전환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p>	
<p>신설</p>	<p><b>제 8 조의 5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b></p> <p>① 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인 동시에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기준은 제8조의 2 2항을 준용한다.</p> <p>③ 상환과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3조의 1항부터 6항 및 제8조의 4조의 2항부터 4항을 준용한다.</p> <p>④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및 기타 권리의 구체적인 조건, 내</p>	

	용, 범위, 행사절차, 효력 등 기타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b>제 9 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b>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b>제 9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b> 회사는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
<b>제 11 조 (전자주주명부)</b>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b>제 11 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b>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정관에 맞춰 수정
<b>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 ① <del>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관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del>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del>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del>	<b>제 12 조 (기준일)</b>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이 불필요하여 해당 내용 수정
<b>제 16 조 (신주의 배당기일)</b>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b>제 16 조 (신주의 동등배당)</b>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표준정관에 맞춰 수정
<b>제 19 조 (전환사채의 발행)</b>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u>오백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u>오백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벤처금융회사 또는 투자조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u>오백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중략)	<b>제 19 조 (전환사채의 발행)</b>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u>육백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u>육백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벤처금융회사 또는 투자조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u>육백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중략)	사채 발행 범위 확대
<b>제 20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	<b>제 20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	사채 발행 범위 확대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채의 액면총액이 <u>오백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2. 사채의 액면총액이 <u>오백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벤처금융회사 또는 투자조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사채의 액면총액이 <u>오백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중략)</p>	<p>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채의 액면총액이 <u>육백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2. 사채의 액면총액이 <u>육백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벤처금융회사 또는 투자조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사채의 액면총액이 <u>육백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중략)</p>	
<p><b>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u>오백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li> <li>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li> </ol>	<p><b>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u>육백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li> <li>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li> </ol>	사채 발행 범위 확대
<p><b>제 31 조 (주주총회 의사록)</b></p> <p>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동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b>제 31 조 (주주총회 의사록)</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li> <li>②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동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li> </ol>	표준정관에 맞춰 수정
<p><b>신설</b></p>	<p><b>제 32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b></p> <p>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표준정관에 맞춰 수정
<p><b>신설</b></p>	<p><b>제 33 조 (의결권 불통일행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li> <li>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표준정관에 맞춰 수정
<p><b>제 32조 (이사의 수)</b> (중략) <b>제 33조 (이사의 선임)</b> (중략)</p>	<p><b>제 34 조 (이사의 수)</b> (중략) <b>제 35 조 (이사의 선임)</b> (중략)</p>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p><b>제 34조 (이사의 임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된다.</li> <li>② 제37조에 의하여 이사의 결원에 따른 보선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li> </ol>	<p><b>제 36 조 (이사의 임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된다.</li> <li>② 제39조에 의하여 이사의 결원에 따른 보선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li> </ol>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p><b>제 35조 (이사의 의무)</b> (중략) <b>제 3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b> (중략)</p>	<p><b>제 37 조 (이사의 의무)</b> (중략) <b>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b> (중략)</p>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b>제 36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b> (중략)	<b>제 38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b> (중략)	
<b>제 37 조 (이사의 보선)</b>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독립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b>제 39 조 (이사의 보선)</b>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독립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변경에 따른 변경
<b>제 38 조 (이사의 직무)</b> (중략) <b>제 39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b> (중략) <b>제 40 조 (결의방법)</b> (중략)	<b>제 40 조 (이사의 직무)</b> (중략) <b>제 41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b> (중략) <b>제 42 조 (결의방법)</b> (중략)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b>제 41 조 (위원회)</b>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보수위원회 3. 이사추천위원회 4. 경영위원회 5. 윤리위원회	<b>제 43 조 (위원회)</b>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보수위원회 3. 이사추천위원회 4. 경영위원회 5. 윤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에 맞춰 수정
<b>제 42 조 (이사회 의사록)</b> (중략) <b>제 43 조 (상담역 및 고문)</b> (중략) <b>제 44 조 (대표이사의 선임)</b> (중략)	<b>제 44 조 (이사회 의사록)</b> (중략) <b>제 45 조 (상담역 및 고문)</b> (중략) <b>제 46 조 (대표이사의 선임)</b> (중략)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b>제 45 조 (대표이사의 직무)</b>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 유고사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b>제 47 조 (대표이사의 직무)</b>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중복사항(제40조) 삭제
<b>제 46 조 (감사의 수)</b> (중략)	<b>제 48 조 (감사의 수)</b> (중략)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b>제 47 조 (감사의 선임)</b>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수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b>제 49 조 (감사의 선임·해임)</b>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p>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b>제 48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b> (중략)</p>	<p><b>제 50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b> (중략)</p>	<p>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p>
<p><b>제 49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li> <li>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li> <li>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li> <li>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3항 및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li> <li>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li> <li>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li> <li>⑦ 제6항을 청구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li> </ol>	<p><b>제 51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li> <li>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li> <li>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li> <li>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li> <li>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li> <li>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li> <li>⑦ 제6항을 청구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li> </ol>	<p>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p>
<p><b>제 50 조 (감사특)</b> (중략)</p>	<p><b>제 52 조 (감사특)</b> (중략)</p>	<p>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p>
<p><b>제 51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i> <li>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li> </ol>	<p><b>제 53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i> <li>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li> </ol>	<p>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p>
<p><b>제 52 조 (사업연도)</b> (중략)</p>	<p><b>제 54 조 (사업연도)</b> (중략)</p>	<p>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p>
<p><b>제 5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표이사는 상법 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li> <li>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del>6주간</del> <u>6주</u> 전부터 <del>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del></li> <li>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li> <li>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li> </ol>	<p><b>제 55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표이사는 상법 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li> <li>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li> <li>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li> <li>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li> </ol>	<p>상법 변경 내용 반영</p>

<p>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 54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b> (중략)</p> <p><b>제 55 조 (이익금의 처분)</b> (중략)</p>	<p><b>제 56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b> (중략)</p> <p><b>제 57 조 (이익금의 처분)</b> (중략)</p>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p><b>제 56 조 (이익배당)</b></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3조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p><b>제 58 조 (이익배당)</b></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5조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p><b>제 57 조 (중간배당)</b> (중략)</p>	<p><b>제 59 조 (중간배당)</b> (중략)</p>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 (시행일)</b>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b>제1조 (시행일)</b>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일부터 시행한다.</p> <p>이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정관 변경에 따른 시행일 추가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성명	출생 연월	구분/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원석	1978.01	사내 이사/ 3년	재선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前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본부 前 기업은행 PE 부 前 (주)뉴아세아조인트 사외이사 前 (주)연우 사외이사 前 한국벤처투자 글로벌본부 現 (주)미투온 경영전략부사장 現 ME2ZEN Limited 이사	이사회	-	발행회사의 사내이사
채수원	1980.02	사외 이사/ 3년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前 (주)비전을여는교육 대표이사 前 (주)KT 데이터분석 팀장 現 (주)넥스코리아 데이터분석 부장	이사회	-	-
총 ( 2 ) 명						-	-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후보자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조정희	1975.10	3년	신규선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前 법무법인 에버그린 前 법무법인(유)세종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이사회	-	-
총 ( 1 ) 명						-	-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 388 조 및 당사 정관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3 기(2022년도)의 이사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 (1) 제 12 기 이사보수한도액 : 2,000 백만원
- (2) 제 13 기 이사보수한도액 : 2,000 백만원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 388 조 및 당사 정관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3 기(2022년도)의 감사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 (1) 제 12 기 감사보수한도액 : 100 백만원
- (2) 제 13 기 감사보수한도액 : 100 백만원